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417
----------	-----

제출년월일 : 2018. 0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의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분쟁조정의 대상, 신청 및 통지, 선정대표자, 조정의 처리기간 및 조정안 등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

라. 사실조사·검사, 조정의 거부와 중지, 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조서, 조정의 비용부담 등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17.10.27. ~ 2017.11.17.) 결과, 의견제출 없음
- 2) 행정규제검토(2016.12.15. ~ 2016.12.22.) 결과, 비규제
- 3) 부패영향평가(2016.12.15. ~ 2017.1.26.) 결과, 개선권고사항 반영
※ 관련평가결과 반영내용 별첨
- 4) 성별영향분석평가(2016.12.23. ~ 2017.1.2.) 결과,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평창군수는 법 제71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른다.

1. 위원장 등의 직무
2. 의사·의결 정족수, 공개·비공개 및 운영규정
3. 위촉해제, 제척·기피 및 회피, 수당·여비 등 지급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분쟁조정 대상)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서 “시·군·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평창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5조(분쟁조정 신청 및 통지 등) ①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리·병합의 내용과 그 뜻을 조정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선정대표자)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하 “단체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단체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조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해야 한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그 선정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조정절차의 처리기간 및 조정안) ①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3. 신청취지
4. 조정일자
5. 조정이유
6. 조정결과

제8조(사실 조사·검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에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출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출석을 요청받은 사람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조정 의 거부와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조서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별지 제5호서식의 답변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조서(調停調書)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조정조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3. 교부일자
4. 조정내용
5. 신청의 표시(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④ 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조정비용 부담 등) ① 분쟁조정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1. 조사, 분석 및 검사에 드는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드는 비용
3.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조정에 드는 비용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정이 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 그 사용 잔액을 당사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선정대표자, 대리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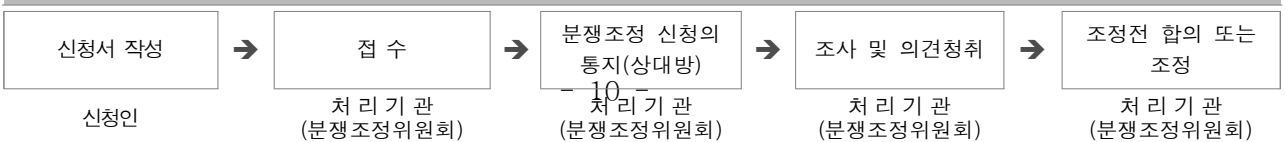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

처리절차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

받는 사람 (피신청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 소	
사건 내용	사건 번호	제 호(년 월 일)
	공동주택단지명 및 주소	
	신청인	
	신청요지	

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청하였기에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 필요)에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사본 1부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제출 서식 1부

년 월 일

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청인

※ 유의사항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認定)하지 않고 부인(否認)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사건	사건번호	제 호(년 월 일)		
	사건명			
	신청인			

제출자	피신청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선임시)	성명			
		주소			
		관계(자격)	전화번호		

답변내용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분쟁조정 시 참가 여부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	참석 시 ○표를 합니다.
	2. 조정에 불응하겠습니다.	불응 시 ○표를 합니다.

위와 같이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
------	--

[별지 제4호서식]

선정대표자 선임계
[] 최초 선정 [] 변경 [] 해임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사 건 번 호			
신 청 인	성명(상호) :		
피신청인	성명(상호) :		
신청인의 선정대표자	이 름		전 화 번 호
	주 소		
	이 름		전 화 번 호
	주 소		
	이 름		전 화 번 호
	주 소		
변경 또는 해임	변	전	
	경	후	
	해	임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

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선정대표자 선임·변경 또는 해임을 위한 공동신청인(명) 서명·날인서 1부
------	--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 표를 합니다.

당사자 구분	[] 신청인	[] 피신청인
사건	사건번호	제 호(년 월 일)
	사건명	
	공동주택 단지명 및 주소	
수락 여부	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	수락 시 ○표를 합니다.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 80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	거부 시 ○표를 합니다.

위와 같이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

년 월 일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유의사항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관련 평가결과 반영 내용]

□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사항 반영

○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중복규정 삭제 : 반영

⇒ 조례 초안 중 제2조(정의),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제1항, 제5조(위원의 제척 등) 삭제

○ 조정의 처리기간을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로 개선 권고

⇒ 법 제74조의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이고, 법 제80조제3항에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원도 타 시·군 조례 비교 시 대부분의 지역이 “60일 이내”로 운영 중임에 따라 원안대로 진행

관계법령 발췌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군·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제72조(중앙·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2.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군·구 관할 분쟁
3.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4.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할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할 사람
4. 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감정평가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할 사람
5.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할 사람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임명,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 보궐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는 제40조제3항, 제6항, 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
-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의 직무 대행은 제40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8항 중 "분과위원장"은 "위원"으로 본다.
-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 ⑥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⑧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 등) ①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조정의 신청절차 및 방법,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3조제3항제3호 위원의 수당 및 여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연락처	(033) 330 -2452